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춘 곤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 춘 곤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